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또는 부적격 판명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산업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전용면적 85㎡ 초과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전용면적 85㎡ 초과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청주시 및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청약통장으로 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 청약자의 배우자, 청약자 및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전혼자녀 등)도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기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원'에서 세대원의 범위 확대로 '동거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시 세대원 판단기준

